고 시

⊙ 과학기술처고시 제90-1호

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에 관한 교육훈련

원자력법 제7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0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에 관한 교육훈련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1990년 2월 9일

과학기술처장관

원자력법 제7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0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에 관한 교육훈련의 교육훈련기관, 교육훈련교과과정 및 교육훈련자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1. 교육훈련기관의 명칭 및 주소
   가. 명칭 : 한국원자력연구소
   나. 주소 : 대전시 중구 덕진동 150
2. 교육훈련교과과정명 :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자격 취득에 관한 교육훈련
3. 교육훈련 자격요건 : 원자력법시행령 제288조제2항 별표 1 제5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한 면허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는 자
4. 교육훈련 교과과정 : 별표 1과 같음.
5. 참고사항 : 동 과정을 이수한 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신고사용기관의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음.
   가.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의 경우 : 사업소마다 연간사용량이 3,700메가베크렐(100밀리큐리)이하
   나. 방사선발생장치의 경우 : 사업소마다 자체차폐된 방사선발생장치로서의 최대사용전압이 170킬로볼트 이하이고 차폐체 외부표면에서의 방사선량율이 매시간당 0.75밀리렌트겐 이하

부 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교 과 목	교 과 내 용	교육시간		
		강의	실습	계
1. 방사선취급기초이론	가. 원자핵물리 나. 방사화학 다. 방사선생물학	6		6
2. 방사선방어실무이론	가. 방사선방어개념 나. 방사선량과 단위 다. 방사선방어의 기준 라. 방사선방어의 원칙	6		6
3. 방사선측정실무	가. 방사선에 관한 일반적인 소개 나. 방사선측정 다. 방사선량 측정 라. 방사선오염 측정	6	6	12
4. 방사선 작업시설에서의 방사선 관리실무	가. 방사선방어용 계측장비 취급기술 나. 작업환경의 방사선 감시 다. 밀봉선원외 안전취급 기술 라. X-선 발생장치의 안전취급 기술 마. 밀봉선원의 저장·운반 및 폐기기술 바. 방사선원분실 및 손상 사고대책 사. 방사선시설 설계 아. 방사선과 피폭사고 사례분석 및 검토	9	14	23
5. 방사선취급 실무에 관한 법령 및 기준	가. 방사선취급실무에 관한 법령 나. 방사선취급 인허가 실무	3	10	13